

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3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*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*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요내용

가.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함

나. 운용규모 : 496억 46백만원 (당초계획 대비 296억 46백만원 증가)

<수입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계획 (B)	증감 (B-A)
계	20,000	49,646	29,646
전입금	20,000	49,646	29,646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계획 (B)	증감 (B-A)
계	20,000	49,646	29,646
예치금	20,000	49,646	29,646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전입금 수입 : 29,646백만원 증가 (20,000 → 46,646백만원)

-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 수입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예치금 : 29,646백만원 증가 (20,000 → 46,646백만원)

-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전입금 296억 46백만원 수입에 따라 예치금 증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'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(733억 9,100만원)중 여유재원 296억 4,600만원이 동 기금으로 전출되어
- 수입계획중 **전입금**(296억 4,6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**예치금**(296억 4,6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〈표 3-1〉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출합계		20,000	49,646	29,646	148.2
재 무 활 동 (물 순 환 안 전 국 물 재 생 계 획 과)	보 전 지 출 (하 수 도 사 업 회 전 기 금)	20,000	49,646	29,646	148.2
	예 치 금	20,000	49,646	29,646	148.2

※ 자료근거 :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하수도사업 회전기금, ②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구성

-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)**의 당초 지출계획보다 148.2%, 296억 4,6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

○ 아울러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관련 법령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,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“예치금”으로 기재하고,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음

- 지난 '22년 4월에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처럼 의회에 제출된 다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정책사업명을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지적된 바,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○ 관련 법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,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,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,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

- 「2022~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」은 지난해 12월, 예산안이 수정 의결 되었고, '22년 4월에도 '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수정의결된 바 있으며 금번 제311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인하여 재정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어 「2022~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- 그러나 관련 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- 또한 관련 법과 관련 기준은 또한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변경 결과를 즉각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관련 기준이 관련 법의 단서를 근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,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

- 서울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결과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기간 불일치되는 결과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더욱이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의 경우, 당초 지출계획보다 296억 46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동 기금의 예치금은 결국 하수도 사업에 대한 장래 투자재원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